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안내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무관한 사업을 겸업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유의가 필요합니다.**

*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 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1. 근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7조, 제18조 제2항 등

2. 지원대상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포함)**는 월평균보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예 : 가정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가정 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종사자 등**

3. 안내사항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❶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❷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❶❷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 개) 사업장별로 신청(지원, 제외)해야 함

❷지원 제외신청서에서 '근로자 제외'란에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 명부를 작성,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지원 제외신청서 작성·제출

② 기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국세청)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공단)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신청(공단)**

* 부가가치세 면제 관리, 다른 사업과의 구분 운영 등에 용이

* 이 경우에도 보수·재산 등의 지원요건과 맞지 않는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필요

- 소속 근로자 수, 보험가입 현황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51, 044-202-7024)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리플렛 (앞면)

<별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리플렛 (뒷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가사근로자법」이란?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의무적 가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속 가사근로자

지원요건

2022년 ❶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❷ (재산) 6억원 미만
❸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 사회보험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음

지원수준·기간

-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각 80%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한시 사업으로 '24. 12. 31.까지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해 지원

지원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

↓

공단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에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원천 공제한 경우,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함

신청방법

2022년 6월 16일부터 사업주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① 회원가입

↓

② 4대사회보험 가입

↓

③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중 한곳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발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랑' (www.gasarang.go.kr, '22. 6. 16. 오픈 예정)을 참고하세요.